<붙임>

<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>

1.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합니다. 아래의 그림파일을 보시고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. **2021.12.31.자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완료 된 정규직 직원**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(※ 일용직, 프리랜서 : 대상자 아님)

2. 다른 직장에서 **이직**한 경우, **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**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☞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득자보관용)을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.

3. **2021년 중도 입사자**의 경우,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시 **근무한 월만 체크**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(★★)

21.01.01~05.30 : 종전 근무지
21.08.01~12.31 : 현재 근무지 **(←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)**

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만 체크하여 조회 **(공백기간인 6월 7월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)**

4. 홈택스 접속 후 아래의 자료를 **"각각 클릭"**하여 조회합니다.



[한번에 내려받기] 후 이름+생년월일로 파일을 저장하여 당사로 **2022. 02. 03.(목)까지** 메일전송(youth@dgca.or.kr)부탁드립니다.
(종이 출력 X, 암호 X)

※ 추가 체크 리스트

☐ 1. 부양가족 지출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: **제공동의현황 조회 ▶ 자료제공동의신청** 후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능
☞ **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**인 부양가족만 반영가능. 다시말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등 반영불가. **(단, 의료비는 소득요건 없이 모두 가능)**
☞ 이름,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**(부양가족공제대상자 체크 필수)**

☐ 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☞ 종교단체 등 기부금영수증,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(미술학원, 태권도장), 안경 구입비 등

☐ 3. **월세** 세입자(2021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)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
☞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지급 증명서류 (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)를 반드시 제출